

제 392 호

1973. 8. 7.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양택식

편집 : 문화공보실장 김진호

전화 75-7614

인쇄 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

전화 75-6090

# 시 보

차 례

이 영구보존을 위한 마이크로 필름으로 촬영하였음. 1973. 8. 1. 서울특별시 시민과장
--

◎ 조 례	
제 792 호 : 서울특별시 제 1회 지하철 공채 조례	3
◎ 고 시	
제 131 호 : 도시계획시장, 백화점 및 주차장시설 결정과 지적승인	4
◎ 공 고	
제 153 호 : 사회단체 변경 등록	5
◎ 사 령	5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## 서울특별시

조 례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서울특별시제 1회지하철공채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양택식  
1973년 8월 6일

◎ 서울특별시조례 제 792 호

서울특별시 제 1 회  
지하철공채조례

제 1 조 ( 목적 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 
가 시행하는 지하철건설사업의  
1973년도 사업비 재원충당을 위  
하여 제 1 회 서울특별시 지하철공  
채 ( 이하 " 공채 " 라 한다 ) 를 발행  
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 
적으로 한다 .

제 2 조 ( 공채의 발행총액 ) 공채는  
총액 3,500,000,000 원을 한도로  
서울특별시장이 발행한다 .

제 3 조 ( 공채의 발행방법 ) 공채는  
무기명식으로 하여 할인의 방법에  
의하여 매출한다 .

제 4 조 ( 공채의 권면금액 ) 공채의  
권면금액은 1만원 , 10만원 , 50만  
원 , 100만원의 4종 이내로한다 .

제 5 조 ( 공채의 매출가액 ) 공채는  
권면금액에서 6월분에 해당하는  
이자액을 할인한 금액으로 매출  
한다 .

제 6 조 ( 공채의 매출방법 ) ① 공채는  
일반매출로 한다 . 다만 필요한  
경우에는 첨가 소화의 방법에 의  
할 수 있다 .

② 공채를 인수하고자 하는 자가  
있을 때에는 공채의 총액 또는  
일부를 인수하게 할 수 있다 .

③ 첨가 소화매출의 경우 그 소화  
기준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  
다 .

제 7 조 ( 공채의 매출기간 ) 공채의  
매출기간은 이 조례 공포일로부터  
7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. 다  
만 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 
73년도 출납폐쇄기까지 연장할  
수 있다 .

제 8 조 ( 원금의상환 ) ① 공채의 원금  
은 2년후 ( 1975년도 ) 에 권면금  
액을 일시 상환한다 .

② 전항에 의한 상환일은 발행일  
익일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.

제 9 조 ( 이율 ) 공채의 이율은 연  
14%이하로 한다 .

제 10 조 ( 이자지급방법 ) ① 공채의

이자는 전조의 이율에 의하여 매  
출일에 6월분의 이자를 할인의  
방법으로 지급하고 2회부터는 매  
6월마다 그전에 속하는 것을 지  
급한다.

②이자는 발행일로부터 계산한다.  
다만, 제 1회 이자는 매출일로부터  
일할로 계산한다.

③원리금의 상환 또는 지급 개시  
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  
한다.

제 11 조 ( 원금 및 이자의 지급장소 )

공채의 원리금 상환지급업무는 서  
울특별시 금고 또는 시장이 지정하  
는 은행에서 취급한다.

제 12 조 ( 공시최고, 제 권판결 ) ①공

채증권을 별실한 때에는 공시최고  
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 
할 수 있다.

②공채증권을 별실한 자는 법원의  
제 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면 공채의  
원리금의 상환지급을 청구하지 못  
한다.

제 13 조 ( 원리금 청구권의 시효 ) 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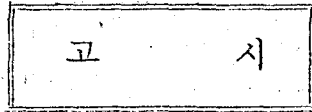
채의 원리금 청구권의 소멸 시효

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 6 조 제  
4 항의 규정에 의한다.

제 14 조 ( 시행규칙 ) 이 조례의 시행  
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  
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 
한다.

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31 호

도시계획시장, 백화점 및  
주차장시설결정 과 지적승인

1. 도시계획사본(시장 및 백화점,  
주차장)결정과 지적승인을 다음과  
같이 하였기 도시계획법제 12 조와  
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제 123 호  
( 73.4.4 )에 의하여 이를 고시  
한다.

1973. 7. 30.

서울특별시 시장

가. 도시계획시장 및 백화점 및 주차장 시설조서

순위	시 설	병 위	치 면	적 비	고
1	시	창	동대문구전농동 647-1외7필	4,048	
2	시	장	중구남대문로2가123-3 (미도파백화점추가) 소공동 30-5, 7, 8	829.95	7 층전체물주차장 시설

별첨: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의 관할구청. 시민봉사실에 보관합니다.

공 고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153 호

사회단체변경등록

사회단체등록에 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단체인 서울특별시 직업청소년 보호회가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변경등록하였기 이를 공고하다.

- 1. 등록번호: 서보사등제 10호(70.8.31)
- 2. 변경년월일: 1차변경(71.9.20)  
2차변경(73.7.31)
- 3. 변경등록사항

(변경전) 단체의소재지: 서울특별시

중구 을지로3가 241번지

대표자성명: 김 정 숙

주 소: 서울특별시성북구수유동 421-9

(변경후) 단체의소재지: 서울특별시

중구 남창동 62 - 5

대표자성명: 조 형 권

주 소: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 2가

25-9

1973. 8. 2

서울특별시 장 양 택식

사 령

서울특별시 전기기좌 임 병 호  
기 전 과

수도국기전 과장 직구대리를 명함

◎ 1973. 7. 30

<p>토목과토목계장직무대리 토 목 기 좌 지방토목기좌에 임함 토목계장에 포함 7호봉을 급함</p>	<p>장 인 식</p>	<p>영동출장소건설과장직무대리 토 목 기 좌 지방토목기좌에 임함 건설과장에 포함 11호봉을 급함</p>	<p>최 영 수</p>
<p>도봉구토목과장직무대리 토 목 기 좌 지방토목기좌에 임함 토목과장에 포함 7호봉을 급함</p>	<p>장 옥 환</p>	<p>토목시험소토질과장직무대리 토 목 기 좌 지방토목기좌에 임함 토질과장에 포함 10호봉을 급함</p>	<p>공 하 영</p>
<p>천호출장소건설과장직무대리 토 목 기 좌 지방토목기좌에 임함 건설과장에 포함 5호봉을 급함</p>	<p>김 영 식</p>	<p>운동장 전기기좌 지방전기기좌에 임함 6호봉을 급함</p>	<p>김 상 윤</p>
<p>은평출장소건설과장직무대리 토 목 기 좌 지방토목기좌에 임함 건설과장에 포함 13호봉을 급함</p>	<p>정 필 현</p>	<p>보건예방과 보건기좌 보건기정에 임함 2호봉을 급함 서울특별시보건사회국보건예방과장에 포함 주택건설과 건축기좌 건축기정에 임함 2호봉을 급함 서울특별시주택국주택건설과장에 포함</p>	<p>유 익 현</p>
<p>양서출장소건설과장직무대리 토 목 기 좌 지방토목기좌에 임함 건설과장에 포함 6호봉을 급함</p>	<p>신 우 철</p>	<p>시설과 지방토목기좌 배 회 완 토목기정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서울특별시수도국 시설과장에 포함</p>	<p>배 회 완</p>

기 전 과	지방전기과	염 병 호	◎ 1973. 8. 1
전기과에 임함			
6호봉을 급함			영동출장소 지방토목기원 박 현 호
서울특별시수도국	기전과근무를 명함		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
중 구	지방토목기과	문 강 호	의 결정에 따라 73. 6. 11(발령제
토목기과에 임함			522호) 감봉1월 처분을 동일자로 취소함
3호봉을 급함			용산보전소 지방보전기원 (별리) 한 중 수
서울특별시 중구	토목과장에 임함		73.10.31까지 남부병원 파견근무를명함
(행정개혁위원회) 서 기 관	한 남 영		서대문보전소 지방보전기원 보 (위생심사) 성 한 용
토 목 과	토목기과	장 인 식	73.10.31까지남부병원 파견근무를명함
도 봉 구	토목기과	장 욱 환	동대문구 지방건축기원 보시보(1호봉) 광 태 영
천호출장소	토목기과	김 영 식	본인 임용포기로 인하여 1973.7.5
은평출장소	토목기과	정 필 현	자 발령제 587호를 동일자로 취소함
양서출장소	토목기과	신 우 철	대 대현산배수지 지방토목기원 송 부 진
영동출장소	토목기과	최 영 수	사 무 소 보시보(1호봉)
토목시험소	토목기과	공 하 영	본인불출두로 인하여 1973.4.21자발령
운 동 장	전기과	김 상 윤	제 391호를 동일자로 취소함
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	전출을 명함		서대문구 지방토목기원 보시보 조 선 규
			양서출장소 " 강 재 열
			마 포 구 " 이 광 호
			은평출장소 " 원 용 범
			동대문구 " 천 영 철
1973. 7. 30 자			본인 불출두로 인하여 1973.7.5자발령
대 통 령			589호를 동일자로 취소함

마 포 구 지방토목  
기원보시보 강 성 구  
군북무로 인하여 1973.7.5자  
발령 제 589 호를 동일자로 취  
소함.

중 구 지방토목 김 송 원  
기원보시보  
마 포 구 " 송 영 승  
성 북 구 " 노 경 찬  
수도사업소 " 김 대 영  
동대문구 "

본인 불출두로 인하여  
1973.7.5자 발령제 589 호를  
동일자로 취소함.

서대문구 지방토목 이 연 구  
기원보시보  
성 북 구 " 황 태 봉  
구의수원지 " 주 현 갑  
사무소 "

군북무로 인하여 1973.7.5자  
발령제 589 호를 동일자로 취소함.

성 북 구 지방토목 성 광 용  
기원보시보  
본인 임용포기로 인하여  
1973.7.5자 발령제 589 호를  
동일자로 취소함.

성 동 구 지방토목기사 이 경 철  
수도사업소  
지방공무원법제 69 조 1,2 호의  
규정에 의거 감봉 1월에 처함.

영 동 포 구 지방건축 성 용 창  
기원보  
동대문구 " 한 경 덕

지방공무원법제 69 조 1,2 호  
의 규정에 의거 감봉 6월  
에 처함.

방호담당관실 지방행정 유 갑 선  
사무관  
단속과 단속계장에 포함.

◎ 1973.8.3

주택건설과 지방건축 박 현 식  
기원보  
부적을 명함.  
5 호봉을 급함.  
동대문구 근무를 명함.

◎ 1973.8.4

상동구(뉴 지방농림 이 북 실  
지사업소 기원보  
과건축)  
지방농림기원승진(73.8.1자  
발령제 709 호)를 동일자로  
취소함.

◎ 1973.8.6.

도 봉 구 지방행정 김 규 태  
주사보  
지방농림기사보에 임함.  
4 호봉을 급함.  
종로구 근무를 명함.

도 봉 구 지방행정 이 규 영  
주사보  
지방농림기사보에 임함.  
4 호봉을 급함.

<p>동대문구 근무를 명함.        도봉구 지방행정서기보 박인재        지방농림기원보에 임함.        8호봉을 급함.        중구 근무를 명함.</p>	<p>성북구 근무를 명함.        천안시 지방농림기원 오상균       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.        지방농림기원에 임함.        4호봉을 급함.        성동구청호출장소 근무를 명함.</p>
<p>◎ 1973.8.10.        농수산부 농림기사보 신동경       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.        지방농림기사보에 임함.        8호봉을 급함.        공원과 근무를 명함.</p>	<p>산림청 농림기사 이백근       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.        지방농림기사에 임함.        9호봉을 급함.        녹지과 근무를 명함.</p>
<p>산림청 농림기원 김진엽       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.        지방농림기원에 임함.        4호봉을 급함.        도봉구 근무를 명함.</p>	<p>산림청 농림기사보 이재혁       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.        지방농림기사보에 임함.        11호봉을 급함.        용산구 근무를 명함.</p>
<p>보은군 지방농림기원 안효일       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.        지방농림기원에 임함.        6호봉을 급함.       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.</p>	<p>한광순        지방간호기원보 시보에 임함.        1호봉을 급함.        동부병원 근무를 명함.</p>
<p>양평군 지방농림기원 이용태       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.        지방농림기원에 임함.        3호봉을 급함.</p>	<p>감순희        지방간호기원보 시보에 임함.        1호봉을 급함.        중부병원 근무를 명함.        정용화        지방간호기원보 시보에 임함.        1호봉을 급함.</p>



영등포병원 근무를 명함.

김 용 정

지방농림기원보 시보에 임함.

I 호봉을 급함.

양묘장 근무를 명함.

안 상 영

지방농림기원보 시보에 임함.

I 호봉을 급함.

북약공원관리사무소 근무를 명함.

민 남 식

지방약무기원보 시보에 임함.

I 호봉을 급함.

동대문구보건소 근무를 명함.

농촌지도소 농촌지도사 국 응 설

농림기사에 임함.

II 호봉을 급함.

영등포구 근무를 명함.

서 울 특 별 시 장